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68
----------	-------

발의연월일 : 2026. 7. 1 .

발 의 자 : 박지혜 · 이주희 · 황정아
허성무 · 김남근 · 김현정
황명선 · 박지원 · 조인철
허영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종이인쇄물 형태로 제작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각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매 선거마다 반복되는 대량의 종이 선거공보는 막대한 자원 낭비와 많은 양의 선거공보가 제작되고 폐기됨에 따라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선거공보 외에도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 다른 선거운동 수단도 선거마다 막대한 양이 제작·폐기되고 있어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많은 실정임.

이에 선거인의 신청에 의하여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선거벽보·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친환경 소재의 기준 및 종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4조제12항 신설 등).
- 나.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할 때 전자선거공보,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같이 제출하도록 함(안 제65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 다. 전자선거공보 등을 받고자 하는 선거인은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자선거공보를 발송하여 줄 것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 등을 발송할 때 전자선거공보 등을 발송하도록 함(안 제65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 라. 세대원 모두 전자선거공보 등을 신청한 세대에 대하여는 선거공보 등을 발송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65조의2제5항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중전의 제12항) 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를 “친환경 소재의 기준 및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로 한다.

⑫ 선거벽보를 제작할 때에는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5조제13항 전단 중 “제8항까지의”를 “제8항까지 및 제12항의”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전자선거공보) ① 후보자가 제65조제6항에 따라 선거공보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선거공보의 내용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한 선거공보(이하 “전자선거공보”라 한다)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제65조제9항에 따라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이하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라 한다)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이하 “전자선거공보등”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선거인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7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 본인이나 희망하는 방법으로 전자선거공보를 발송하여 줄 것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④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전자선거공보등의 발송을 신청한 선거인에게 제65조에 따라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발송하는 때에 전자선거공보등을 발송한다.

⑤ 제65조에도 불구하고 세대 내의 선거권자인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이 모두 제3항에 따라 전자선거공보등의 발송을 신청한 경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세대에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발송하지 아니한다.

⑥ 전자선거공보의 규격·작성·제출·확인 및 발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를 “규격, 게시방법 및 제3항의 친환경 소재의 기준·종류 등에”로 한다.

③ 현수막을 제작할 때에는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61조제3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제3호의4 및 제3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6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3의3. 제6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
지 아니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는 “발송”으로,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은 “규격을 넘는다”으로, “경력·학력·학위·상별(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은 “경력등이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로 본다.

⑭ (생략)

<신설>

⑭ (현행과 같음)

제65조의2(전자선거공보) ① 후보자가 제65조제6항에 따라 선거공보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선거공보의 내용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한 선거공보(이하 “전자선거공보”라 한다)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제65조제9항에 따라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이하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라 한다)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이하 “전자선거공보등”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선거인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 7일부터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일까지 전자우편
이나 문자메시지 등 본인이 희
망하는 방법으로 전자선거공보
를 발송하여 줄 것을 관할 구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
청할 수 있다.

④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는 제3항에 따라 전자선거공보
등의 발송을 신청한 선거인에
게 제65조에 따라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발송하
는 때에 전자선거공보등을 발
송한다.

⑤ 제65조에도 불구하고 세대
내의 선거권자인 세대원(세대
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이 모두 제3항에 따라
전자선거공보등의 발송을 신청
한 경우 관할 구.시.군선거
관리위원회는 해당 세대에 선
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를 발송하지 아니한다.

⑥ 전자선거공보의 규격·작성
.제출·확인 및 발송, 그 밖에

제67조(현수막) ① · ② (생략)

<신 설>

③ 제1항의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신 설>

<신 설>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현수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수막을 제작할 때에는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
게시방법, 제3항의 친환경 소재의 기준 및 종류 등에-----
-----.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6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3의3. 제6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3의2. · 3의3. (생략)

4. · 5. (생략)

④ ~ ⑫ (생략)

3의4. · 3의5. (현행 제3호의2

및 제3호의3과 같음)

4. · 5. (현행과 같음)

④ ~ ⑫ (현행과 같음)